



Governance Issue

20210514

김남은 팀장
nameun.kim@daishin.com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수 : 전년比 7개 증가(64개→71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 전년比 328개 증가(2,284개→2,612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 전년比 6개 증가 (34개→40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 전년比 269개 증가(1,473개→1,742개)

2. 시사점

Ⅰ.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추가 지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투명한 시장 감시에 긍정적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Ⅱ.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의 자산 대비 수익성 집중 및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 공정위,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고 있음을 보도
- 상위 5개 기업집단이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중은 오히려 증가
- 경영 효율성 및 자산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
-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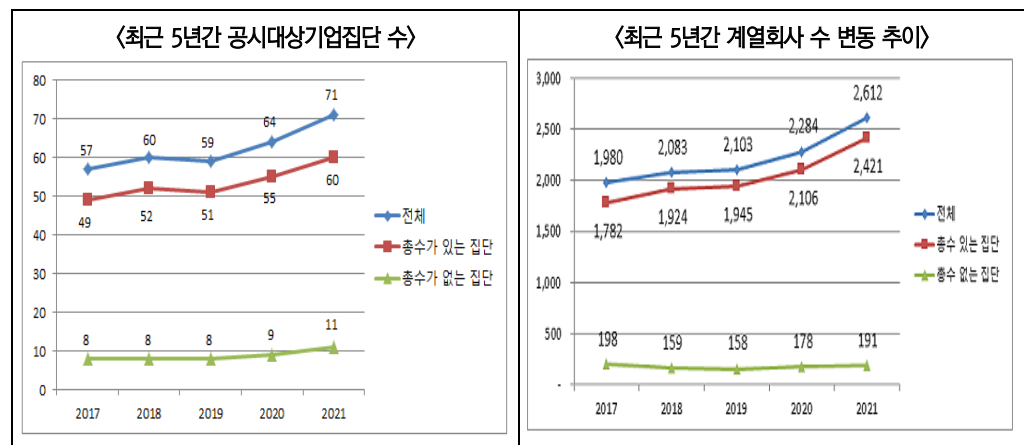
Ⅲ. 공정위의 '동일인의 현실화 노력' 매우 긍정적

-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 후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1년 4월 29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71개(소속회사: 2,612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보다 32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기업 집단이 지정에서 제외(2017년)된 후 최대치임.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34개)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보다 26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공정위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 분석에 따르면,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71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나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최근 2년 연속 감소함으로써 (54.0%→52.6%→51.9%)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71개)에서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라 경영 효율성 및 자산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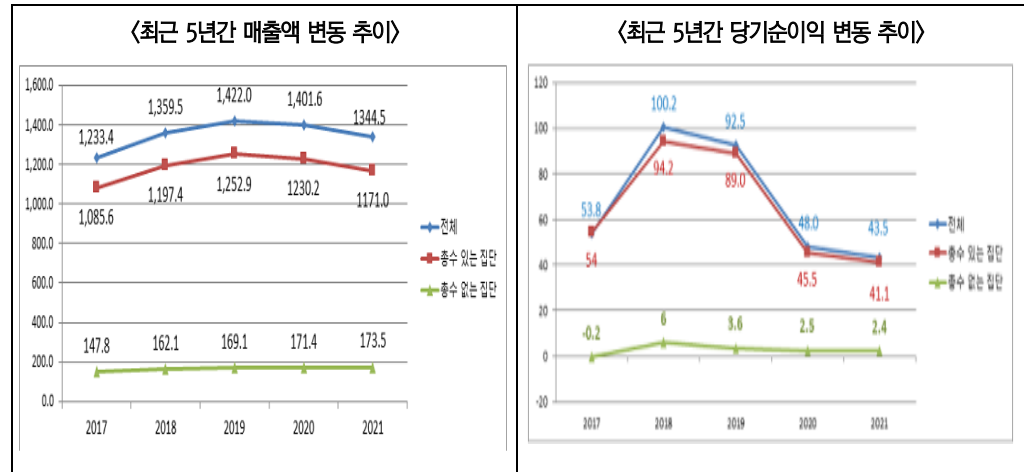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자산총액 (비중)	매출액 (비중)	당기순이익 (비중)
2021년	1,212.0조원 (51.9%)	1,344.5조원 (56.4%)	43.5조원 (71.8%)
2020년	1,143.6조원 (52.6%)	1,401.6조원 (55.7%)	48.0조원 (68.5%)
2019년	1,101.0조원 (54.0%)	1,422.0조원 (57.1%)	92.5조원 (72.2%)

(주1)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 공시대상기업집단 합계 / 비중 : 상위 5개 기업집단 합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는 2년 연속 증가(59개→64개→71개)했음에도 매출액은 지속 감소(1,422.0조원→1,401.6조원→1,344.5조원)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년 연속 감소(92.5조원→48.0조원→43.5조원)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악화됨. 이는 2019년 반도체, 석유 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 집단 실적 악화와 2020년 홍콩시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보다 3.6%p 증가(67.8%→71.7%→75.3%)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2019년 시행된 '리스회계기준' 전면 개정(K-IFRS 제1017호→제1116호)으로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함에 따라 자산·부채가 증가하게 된 영향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거시적 환경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악화된 측면(금호아시아나 부채비율 +34.1%p)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의 증가는 기업집단의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물론,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을 결정하는 자산총액이 증가하게 된 사유(리스회계기준 변경,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부채 증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등)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주요 특징 중 '동일인의 현실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는 금년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여 그 결과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익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하였음. 이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판단할 때 지분율에 대한 물리적 해석 뿐만 아니라 현 동일인의 건강상태, 경영복귀 가능성,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변경)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참고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은 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위반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지배자가 아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실질적 지배자로서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대자동차, 효성 동일인 변경 판단 사유>

구분	외형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	기타 고려사항
현대자동차	- 정의선이 현대자동차(주) 등 주력회사의 회장으로 취임(20. 10. 14.) - 현 동일인이 보유중인 지분(현대자동차(주) 5.33%, 현대모비스(주)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에게 포괄위임¹²⁸ 사실상 최대출자자로서 역할 가능 * '21. 3. 24. 개최된 현대 자동차(주)·현대모비스(주) 정기주총에서 위임내용 대로 의결권 행사	-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결정[*], 주력회사의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기아자동차 사명 변경(→기아) 등 경영상 주요변동 사항이 있었음 ¹²⁸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 * 1조 원 규모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20. 12. 10.) ** 현대오토에버(주)·현대 엠앤소프트(주)·현대오토론(주) 합병(21. 2. 25.)	현 동일인이 고령(1938년생, 84세)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 주력회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현대자동차(주)-'20. 3. 14., 현대모비스(주)-'21. 3. 24.)
효성	- 조현준이 지주회사 (주)효성의 최대출자자 (21.94%)임 - 조현준이 그룹 회장이자 지주회사 (주)효성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17. 7. 20.) - 현 동일인이 보유한 (주)효성 지분(9.43%)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현준에게 포괄위임¹²⁹ 최대출자자로서 지위 강화 * '21. 3. 19. 개최된 (주)효성 정기주총에서 위임내용 대로 의결권 행사	- 조현준 회장 취임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결정^{**}, 주력회사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등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었음 ¹²⁹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 * (주)효성 인적분할(18. 6. 1.)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19. 1. 1.) ** 1.4조 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 결정(18. 2. 6.) *** (주)효성-효성트랜스 월드(주) 합병(20. 12. 10.)	현 동일인이 고령(1935년생, 87세)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 유일하게 재직 중이던 (주)효성의 대표이사·사내이사에서 사임(17. 7. 1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점

I.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회사 주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내지 4) 및 주식고유현황신고(공정거래법 제13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의2),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제11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추가 지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투명한 시장 감시에 긍정적이라 판단됨.

다만, 공정위가 '기업'자체가 아닌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행위 주체 기업의 규모만이 판단기준이 되기에 무리가 있으며,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방지한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중견기업들(농심, 성우하이텍, 넥센, 풍산, SPC, 대상, 오투기 등)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가령,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인 자산총액을 5조원에서 4조원으로 하향하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현행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하되, 4조원부터 5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수, 총수일가의 기업 존재 여부, 부당 내부거래로 제소된 이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II.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의 자산대비 수익성 집중 및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71개)에서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71개)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라 경영 효율성 및 자산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III. 공정위의 '동일인의 현실화 노력' 매우 긍정적

공정위는 금년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여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하였음. 현 동일인의 건강상태, 경영복귀 가능성,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변경)함으로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의 권한과 의무(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 책임(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1)>

’21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 수		자산총액(공정자산)	
	’20	변동			’21	’20	’21	’20
1	1	-	삼성	이재용	59	59	457,305	424,848
2	2	-	현대자동차	정의선	53	54	246,084	234,706
3	3	-	에스케이	최태원	148	125	239,530	225,526
4	4	-	엘지	구광모	70	70	151,322	136,967
5	5	-	롯데	신동빈	86	86	117,781	121,524
6	6	-	포스코	(주)포스코	33	35	82,036	80,340
7	7	-	한화	김승연	83	86	72,898	71,686
8	8	-	지에스	허창수	80	69	67,677	66,753
9	9	-	현대중공업	정몽준	33	30	63,803	62,863
10	10	-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8	58	63,552	60,596
11	11	-	신세계	이명희	45	41	46,409	44,088
12	12	-	케이티	(주)케이티	48	44	37,701	36,315
13	13	-	씨제이	이재현	79	77	34,676	34,537
14	14	-	한진	조원태	31	31	33,600	33,549
15	15	-	두산	박정원	22	25	29,659	29,251
16	16	-	엘에스	구자홍	58	54	25,243	23,717
17	17	-	부영	이종근	23	23	23,321	23,284
18	23	▲5	카카오	김범수	118	97	19,952	14,243
19	18	▽1	DL(舊 대림)	이준용	36	32	19,627	18,695
20	19	▽1	미래에셋	박현주	38	38	19,333	18,554
21	22	▲1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25	18,313	16,027
22	20	▽2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27	17,442	17,579
23	21	▽2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2	3	15,795	16,727
24	45	▲21	셀트리온	서정진	8	9	14,855	8,838
25	24	▽1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28	14,649	14,001
26	25	▽1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2	13	14,413	13,580
27	41	▲14	네이버	이해진	45	43	13,584	9,491
28	31	▲3	에이치디씨	정몽규	29	27	13,549	11,708
29	26	▽3	효성	조현준	50	54	13,281	13,472
30	28	▽2	영풍	장형진	27	26	13,170	12,445
31	27	▽4	하림	김홍국	55	52	13,044	12,478
32	30	▽2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0	10	12,777	11,715
33	32	▽1	케이씨씨	정몽진	18	16	12,277	10,977
34	42	▲8	넥슨	김정주	18	18	11,998	9,465
35	29	▽6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5	11,375	12,320
36	47	▲11	넷마블	방준혁	23	25	10,703	8,31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2)>

’21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 수		자산총액(공정자산)	
	’20	변동			’21	’20	’21	’20
37	44	▲7	호반건설	김상열	42	36	10,698	9,146
38	38	-	SM	우오현	58	53	10,450	9,695
39	39	-	DB	김준기	21	20	10,366	9,628
40	33	▽7	코오롱	이웅열	36	37	10,299	10,428
41	43	▲2	한국타이어	조양래	21	24	9,849	9,385
42	34	▽8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5	16	9,847	10,217
43	35	▽8	오세아이	이우현	18	18	9,815	9,930
44	37	▽7	태영	윤세영	63	61	9,800	9,720
45	36	▽9	이랜드	박성수	33	31	9,509	9,873
46	40	▽6	세아	이순형	29	29	9,470	9,590
47	46	▽1	중흥건설	정창선	37	35	9,207	8,420
48	53	▲5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4	4	8,789	6,528
49	49	-	태광	이호진	19	19	8,767	8,146
50	50	-	동원	김재철	26	25	8,458	7,874
51	51	-	한라	정몽원	15	14	8,104	7,679
52	48	▽4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4	15	8,009	8,289
53	55	▲2	IMM인베스트먼트	지성배	94	79	7,895	6,313
54	52	▽2	삼천리	이만득	42	27	7,841	7,143
55	59	▲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5	12	6,665	5,710
56	58	▲2	다우키움	김익래	45	48	6,593	5,722
57	56	▽1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3	3	6,299	6,149
58	54	▽4	장금상선	정태순	19	17	6,263	6,388
59	57	▽2	동국제강	장세주	11	12	5,956	6,059
60	-	신규	쿠팡	쿠팡(주)	8	-	5,775	-
61	60	▽1	애경	장영신	37	38	5,589	5,631
62	-	신규	반도홀딩스	권홍사	28	-	5,585	-
63	62	▽1	유진	유경선	52	46	5,528	5,435
64	61	▽3	하이트진로	박문덕	18	17	5,448	5,443
65	64	▽1	삼양	김윤	11	13	5,412	5,125
66	-	신규	대방건설	구교운	43	-	5,326	-
67	-	신규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21	-	5,322	-
68	-	신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5	-	5,292	-
69	-	신규	엔디엠	문주현	22	-	5,256	-
70	-	신규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46	-	5,190	-
71	-	신규	중앙	홍석현	56	-	5,014	-
-	-	제외	KG	곽재선	-	20	-	5,256
합계			71개 기업집단		2,612	2,284	2,336,420	2,176,102

(주1)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1~40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대신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